

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간

## 기관업무협약서

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·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농·식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운영원칙)

-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사항 및 시행세칙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제3조(협력분야)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
-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감시 등 농·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검정법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 등 제반 업무 협력
-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지원 등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공유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 협력
- 반려동물 등 사료 품질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료 표준분석법 연구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
- 시험·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
-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

## 제4조(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

양 기관은 제3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 제5조(비밀유지)

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본 협약서의 사업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며,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후에도 동일하다.

## 제6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제7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, 각 기관이 파기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.

## 제8조(기타사항)

본 협약 체결 증명과 협약 내용 준수 및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7월 23일

• 보건환경연구원 • U  
SEOUL

원장 신용승

신  
용  
승

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
시험연구소

소장 홍성희

홍  
성  
희

\* 양 기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.